

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701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01년 11월 23일

제안자 : 총무보사위원회

위원장 이재일

1. 수정이유

- 동 개정조례안 제15조제2항 조문의 내용중 직접교부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당초 서류 1매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 조정하려는 것을 1,000원으로 변경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동 개정조례안 제15조제2항중 통·리·반장의 서류송달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던 수당을 서류 1매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 조정하려는 것을 서류 1매당 1,000원으로 변경 조정함.

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5조제2항중 “800원”을 “1,000원”으로 한다.

수 정 안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5조(서류의 송달방법) ①(생략)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 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송달부 교부근거에 의하여 서류1매당 500원 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.	제15조(서류의 송달방법) ①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800원 ----- --.	제15조(서류의 송달방법) ①(개정안과 같음) 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,000원 ----- --.